

#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읍시다

1973, 2, 28

72년 후반기  
신고마감일자

「취재부 제공」

정부는 축산진흥 시책의 일환으로 1969년 1월 축산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세 또는 감면키로 세법을 개정하였던 바 여기 이에 관한 법규 및 절차를 소개하여 양축가 누구나가 이 세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다시 한번 환기하는 바이다.

## 법규의 주요점

1. 축산업은 그 사업을 개시한 해와 다음해부터 6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세하고 다시 그 후 3년간은 1/2로 감세한다.
2.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기분 6개월 간의 소득 금액을 정해진 신고기간내에 사업 소득 금액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양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3. 축산업의 소득세 감면은 위의 신고와 함께 「소득구분 계산서」를 첨부한 「축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야 된다. 반드시 신고 및 신청절차에 의해서만 혜택을 받게된다.
4. 축산업 이외 다른 유의 사업도 경영할시는 소득에 관한 기장을 따로따로 분리하여 정리해야 된다.
5. 소득세의 계산은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간 중의 기정액에 대한 실사를 받아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잡으며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과세를 받아 과세표준율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산출된다.

4. 신고 및 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에 한다.

## 소득세법 관계조문

### 제8조의2(축산업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득(축산업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해와 그 다음해 부터 6년간은 소득세의 전액, 그후 3년간은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업의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받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축산업을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존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한다.

### 시행령 제18조(축산업의 범위)

법 제8조의 2 제1항에서 축산업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토끼, 사슴, 멧크, 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 증식(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가 아닌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채란, 채모, 착유 등을 하는

별지 제3호 서식

축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거리거진 주 시	
신청인	①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정북면 현곡리 325	
	② 주소	삼 동 12-908 - 100184	
	③ 상 호	개척농장 홍길동	
⑥ 사업명 및 종류 축산업 (양계)			
⑦ 사업개시 년월일 1970. 3. 21			
⑧ 감면 기년 1972년 2기분			
⑨ 감면 종류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⑩ 소득금액	⑪ 세 액	⑫ 감면세액
	⑬ 감면사업	(- 원)	(- 원)
	⑭ 기타사업	(- 원)	(- 원)
	소득세법 제8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73. 2. 20. 신청인 성명 홍길동 ③ 사무국장 귀하		
첨부서류, 소득구분 계산서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입인지 원 음	

(별지 제3호 서식)

소득 구분 계산서			
구분	× (감면) 사업	기타사업	계
업태	축 산업	-	
종류	양 계	-	
소득금액	₩ 150,000	-	
십二字상			
×란에는 면세 소득, 면세소득, 면세소득을 기재한다			

사업을 말한다.

시행령 제19조(축산업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신청) 법 제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축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소득구분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과세 금액의 계산과 기초공제) 사업소득은 자기중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기초 공제액은 1과세기간중 9만원이다.

제27조(세율)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분류과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기분의 과세소득 금액에 다음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차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5만원 이하의 금액	15%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	(7,500)
30 " " "	28%	(31,500)
70 " " "	38%	(101,500)
150 " " "	48%	(251,500)

제28조(정기분 소득의 신고)

①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5조에 규정하는 자기분의 소득 금액을 다음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기분: 당년 8월 말일(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 제2기분: 익년 2월 말일(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얼마만큼의 세금을 어떻게 감면받는가?

예를 들어보자. 1970년 3월부터 양계업을 시작한 사람이 1972년도 후반기(7월~12월) 결산을 하여 보니 총 수입 1,400만원 중 1,250만원의 경비가 들었고 150만원의 소득을 내었다 하자. 이 양계인의

- ① 면세 기간은?
- ② 1/2 감세 받는 기간은 1977~1979
- ③ 72년도 2기분 신고기한은 1973. 2. 28
- ④ 기간중 면세 금액은?

○기장을 한 경우

$$\frac{(1,500,000 - 90,000) \times \frac{38}{100}}{\text{사업소득 기초공제액}} - 101,500 = 434,300$$

세율      누진공제액      세액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인정과제)

$$14,000,000 \times \frac{x}{100} = \text{소득금액} \left( \frac{x}{100} \right) \text{과세표준을}$$

$$\text{소득금액} \times \text{세율} = \text{세액}$$

○서식 참조.

### 세일즈 맨의 임무

지난해 봄 인천근교의 모 양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주인 이야기인즉 양계업이 면세인 줄 알고 있는데 1971년도 2기분 소득세 고지서를 받부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신고 및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세금을 납부케 된 경우인 것이다. 사료회사 부화장 약품회사의 각 세일즈맨들은 적어도 자기 회사의 사료 병아리 약품을 사용하는 거래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계몽 선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에 대한 법규를 충분히 알고 과연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세액을 면세받게 되는 것인지 계산에 의해 보여 줌으로써 양측가 자신이 실감케 할 필요가 있다.

연도 1971년 12월

세무서장 직속인

세무서장 직속인

구분	소득금액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세액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기타소득					
합계					

1971년 12월 31일 현재

세무서장 직속인

가금진료전문

**협성가축병원**

서울 청량리 오스카극장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92) 7779

(96) 9231

협성가축약품공사

가족예방약 치료제 사료첨가제

소득약 기타 일체 총판

서울 청량리 오스카극장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92) 7779 (96) 9231

